

#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,  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 
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28명이 찬성한 「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.
-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에서 신체활동장려사업은 직장, 학교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는 입법취지에 따라 서울시 소재 직장 종사자 및 대학(원)생을 대상자로 지원해 왔습니다.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해당 근거가 지금까지 없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이에 협행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‘서울 소재 대학(원)생’을 참여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서울시민의 신체활동장려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